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노웅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426

발의연월일: 2021. 5. 27.

발 의 자:노웅래・기동민・김두관

박용진 · 서영석 · 안규백

오영환 • 이규민 • 장경태

한준호 · 홍성국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자원순환기본법」에서는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최종처분율, 순환이용률, 에너지회수율을 국가 자원목표로 설정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,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폐기물 발생이 감 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신설이 필요한 상황임.

또한,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거나 순환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평가 결과 공개 외에 별다른 조치가 불가한 실정임.

이에 실질적인 폐기물 발생 감량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폐기물 발생 감량률을 국가 및 사업장 폐기물 감량 목표로 추가하여 폐기물 감량 관리를 강화하고(안 제14조 및 제16조),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

이용성 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개선을 명령하며,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순환이용성 평가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9조 및 제36조).

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원순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기준연도 대비 해당연도 원단위 폐기물 발생 비율인 발생 감량률 제16조제1항 중 "제1호 및 제2호"를 "제1호, 제2호 및 제4호"로 한다. 제1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4항까지"를 "제5항까지"로 한다.
-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개한 다음 연도 이후에도 해당 제품등을 생산·가공·수입·판매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.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한다.
 - ① 제19조제5항에 따른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개선 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를 받은 제 품등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설	제14조(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설
정 등)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	정 등) ①
의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을	
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	
사항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・단	
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	
고,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	
여야 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기준연도 대비 해당연도 원
	단위 폐기물 발생 비율인 발
	<u>생 감량률</u>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16조(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	제16조(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
리 및 지원) ① 환경부장관은	리 및 지원) ①
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중	
장기・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	
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항 <u>제1호</u>	<u>제1호,</u>
및 제2호에 대하여 환경부령으	제2호 및 제4호
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	
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	
자(이하 "자원순환성과관리대	
상자"라 한다)별 자원순환 목표	
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	

따라 설정 •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~ ⑧ (생 략)

제19조(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 이용성 평가) ① ~ ④ (생 략)

<신 설>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의 평가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6조(과태료) <신 설>

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 경부장관이 부과 · 징수한다.

② ~ ⑧ (현행과 같음)
제19조(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
이용성 평가) ① ~ ④ (현행과
같음)
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
평가 결과를 공개한 다음 연도
이후에도 해당 제품등을 생산ㆍ
가공・수입・판매하는 자가 제
3항에 따른 개선 권고를 이행하
지 않은 경우 기간을 정하여 개
선을 명할 수 있다.
<u>⑥</u> <u>제5항까지</u>
제36조(과태료) ① 제19조제5항에
따른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
미청 기세계도 1월마이 시설이

<u>니한 자에게는 1전만원 이하의</u>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② (현행 제1항과 같음)
- ③ 제1항 및 제2항-----